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

제출년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

## 2.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안 제4조), 관계자(시장,사업자,주민)의 책무(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
  - 다량배출 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안 제18조)

##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4.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 붙임 : 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개정안)-환경부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필증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④시장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실적이 우수한 가구 및 단체에게는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 납부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이행신고에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사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 찬기와 복합 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하여 시 조례로 정해진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장의 권고·지도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작성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게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

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세대별·운영주체별로 부과·징수하고,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의2(수수료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의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

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칩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같은 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의2(납부필증칩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칩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관명·사용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유출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 제작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6호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 차량 및 전용 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때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을 하려면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분명하게 밝히되, 규칙 제10조제4호 규정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함을 밝혀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

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생산·유통 · 가공·조리 과정 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조리 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 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폐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li> <li>○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 시설의 적정처리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li> <li>○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등 핵과류의 씨, 1회 용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li> </ul>

〈 별표 2 〉

## 과태료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 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 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 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 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 억제방법 등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 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 13조 관련)	10 20 20 50 30 30 30 30 30 60 20 100	20 30 30 70 50 50 40 80 30 300	30 50 50 100 100 100 60 100 50 500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즉시
신고인 사업장 규모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⑥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건조처리				⑯ 전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리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kg/일		kg/일	kg/월		
⑮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⑯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 · 전화
	kg/월	원/k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총 주 시 장 (인)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처리방법은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처리능력은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⑬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⑭ 부산물 처리는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 부산물의 양과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⑮ 자가재활용 계획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⑯ 위탁재활용계획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 일	발생 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방법							
처리실적							
자가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총 주 시 장 귀하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행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점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

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

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향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 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식품쓰레기</li><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li><li>- 비닐·병뚜껑·폐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li></ul>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모	⑥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sup>2</sup>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sup>2</sup>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⑯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리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kg/일		kg/일	kg/월		
⑮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⑯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성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⑨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처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⑬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⑭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⑮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⑯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 일	발생 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2$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2$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